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3,836,160	14,815,085
일반회계	481,721,540	14,451,646
특별회계	12,114,620	363,439
기타특별회계	12,114,620	363,43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92,077	35,762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361,128	40,834
건축진흥특별회계	609,000	18,27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617,295	18,51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42,834	7,285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16,015	3,48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3,410	1,902
드림빌특별회계	1,872,695	56,18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56,019	43,68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84,147	137,52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83,20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